

## 제4장 손해배상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사례

### ▶ 사례14

전단 배포 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두고 불법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388·389, 2016서울조정390·391(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3. 16.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대학로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호객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공연 전단을 배포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을 촬영 및 보도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중재부는 신청인의 전단배포행위가 호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 게재 및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손해 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중앙일보 -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 내 용

주말에 서울 대학로를 훑어 나가봤는지.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를 나갈 때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이가 있다. 속칭 ‘삐끼’라 불리는 호객꾼이다.

연극·뮤지컬 리스트가 빼곡한 책받침을 들고는 “배꼽 빠져요”라며 옷깃을 붙잡는다. 때론 옛되고 간혹 꼴렁댄다. “삐끼가 대학로 물 흐른다”라며 술한 연극인들이 목청을 높이지만 잠초갈다. 단속을 비웃으며 활개친다. 그래서 “뒤에 조폭이 있다” “점조직이다” 등 소문만 무성하다.

과연 대학로 삐끼는 누구인가. 그 세계를 알아보려고 삐끼 경력 5년의 박모 씨를 접촉했다. “이 바닥 좁다. 나라는 김새라도 보이면 당장 떠야한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인터뷰는 18일과 19일 두 번 진행됐다.

질의 : 단도직입적으로 삐끼는 누구인가.

응답 : “삐끼라는 말 거북하다. ‘전단팀’이라고 해달라. 제작사마다 기획팀·마케팅팀 있지 않나. 그런 업무처럼 공연 소개하는 전단지 만들고 돌리는 일을 한다. 홍보 직원인 셈이다. 단지 그 일을 책상에 있지만 앉고 거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한다. 가장 왕성하게 전단팀을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 M·S·Y 제작사다.”

질의 : 전단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응답 : “제작사에 소속되며 피라미드 구조다. 실장 한명에 팀장 서너명, 각 팀장 아래에 5~10명의 ‘알바’가 있다. 주말엔 고교생 알바가 많다. 전단팀은 비수기 때는 20명, 연말·방학 등 성수기 때는 40명 정도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대목엔 팀별로 80명까지 풀린다.”

질의 : 벌이는 어떤가.

응답 : “기본급 없다. 손님 물어오는 데로 돈 번다. 전단팀 판매액중 35~40%가 뭇으로 떨어진다. 티켓 한장당 실장 5%, 팀장 10%, 알바 20~25% 할당된다. 알바는 100만 원 안팎, 실·팀장은 200만~300만 원 번다. 수입은 웬만한 대학로 배우보다 낫다. 현장까지 직접 뛰는 에이스급 실·팀장은 월 500만 원 찍는다. 4, 5년 전 경기 좋을 때는 월 1,000만 원 넘긴 이도 있었다.”

질의 : 구역은 정해져 있나.

응답 : “가장 인기있는 구간은 다 함께 들어가고, 나머지는 독점 방식이다. 혜화역 3번 출구는 안 간다. 우리끼리 ‘미라 나온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환자가 많아서다. 4번 출구도 별로 재미 못 본다. 노점상이 많아 시끄럽다. 노다지는 2번 출구다. 출구 바로 앞쪽은 S사만 들어간다. 골목길도 구간별로 주인이 있다.”

질의 : “빼끼가 순위 조작한다”고 원성이 높다.

응답 : “예전엔 했다.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식이었다. 예매사이트 순위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한다. 그걸 코팅해서 책받침 만드는데 우리 공연을 가짜로 집어넣는다. 하나는 3위, 다른 하나는 7, 8위로 한다. 1, 2위는 너무 티 나서 안 한다. 그걸 보여주며 손님 꼬드킨다. 근데 모바일 시대 아닌가. 허위 순위 얘기하면 바로 검색한다. 약발 떨어졌다.”

질의 : 뒤에 조폭이 있다는 소문이다.

응답 : “10년 전에는 그랬다고 한다. 동네 양아치면 몰라도 이런 푼돈을 놓고 어떤 주먹이 ‘쪽 팔리게’ 들어오겠나. 요즘 경기 정말 안 좋다.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작품은 후져도 빼끼한테 사면 싸다’는 인식 덕이었다. 근데 최근엔 저가 연극이 수두룩하다. 1만 원 밑으로 팔아선 우리도 남는 게 없다.”

질의 : 대학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주범 아닌가.

응답 : “우리가 하는 건 오프라인 영업이다. 영업은 전쟁이다. 전쟁터에서 무슨 반칙 운운인가. 연극 흥행 안 되면 핑계 필요하니, 그걸 빼끼한테 돌리는 거다. 그렇게 욱하면서 ‘표 팔아달라’고 뒤로 제안하는 건 또 뭐가. 메이저 제작사도 비수기 때는 요청 들어온다. M·S·Y가 빼끼 영업한다는 건 얼추 소문 나 있다. 관공서도 눈치채고 있다. 그럼에도 생존하는 데엔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대학로 빼끼 역사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 ‘개그콘서트’의 이름을 빌린 짝퉁 코믹극이 호객 행위에 적극적이었다. “지나가는 행인 끌어들이는 것도 일종의 연습”이라며 출연진이 직접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특정 표시가 된 전단지들 돌려 회수 양만큼 돈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 개그 공연에 관객이 물리면서 빼끼간 다툼도 빈번해졌다. 구역을 둘러싼 몸싸움과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때는 인근 건달들도 관여했다는 후문이다. 대학로 빼끼 경력 10여년의 정모 씨는 “우리끼리 다툼은 할 망정 선을 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나마 관대하던 대학로 연극인들이 최근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엔 뼈끼문화가 변질됐다는 우려가 있다. 단지 공연을 알리며 관객을 모집하는 수위를 넘어, 순위조작·허위정보·기만행위 등으로 다른 공연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다. 명백한 영업방해라는 인식이다.

현재 호객행위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경범죄다. 한국연극협회 정대경 이사장은 “기업화된 뼈끼 연극 제작사는 폐업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극 물어보면 “1진 배우 다 지방 갔다” 악평

손님 낚는 4단계 기술

멀쩡히 걸어가던 행인을 어떻게 허름한 극장 안으로 데려올까. 대학로 뼈끼의 손님 낚는 4단계 기술은 치밀하다.

1. 포착하라. 무턱대고 달려 드는 건 하수다. 관람 의사가 있는지를 포착해내는 게 첫 단추다. ‘오랜만에 대학로 나왔는데 연극이라도 한번 볼까’라는 뜻이 있다면 서성이게 마련이다. 무언가 찾는 듯한 떨리는 눈매를 간파하라. 그리곤 슬며시 다가간다. “뭐 있는데요?”라고 말하는 이라면 ‘호객’이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다.
2. 흔들어라. 요즘 관객 그리 어수룩하지 않다. 최근 인기 공연이 무엇인지 얼추 안다. “보고 싶은 거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 있어요, 싸게 드릴게요”라고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다. 손님이 다른 작품을 거론하면 멈칫하며 탄식을 내신다.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왜요?”라고 물어오면 “아니요, 그냥 ...”이라며 시선을 회피한다.
3. 악담하라. 기존 선택에 균열을 냈다면 이제 확인 사살이다. 악평을 퍼붓는다. 작품별 매뉴얼이 있다. ‘옥탑방 고양이’를 보고 싶어하면 “남자들끼리 뽀뽀해, 그런 취향이서?”라고 한다. ‘죽여주는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 우울하게 자살하는 애기 좋아해요?”라고 고개를 젓는다. “1진 배우는 다 지방가서 오늘은 처음 서는 신인들인데 ...”도 단골 레퍼토리다.
4. 연기하라. 마지막 필살기다. 예매해주겠다며 전화 건다. “실장님, 저예요.” 물론 가짜다. “아, 자리 없어요, 기둥 뒤?” 이쯤에서 손님은 반쯤 포기한다. 그래도 고집부리면 또 전화거는 척을 한다. “보조석밖에 없대구요? 반 밖에 안보인다고 ...” 결국 손님 입에서 “그럼 뭐가 볼 만 해요?”라는 말이 나온다. 그제서야 “이거 괜찮죠”라며 자신의 작품을 내민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문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경력 5년 ‘빼끼’가 털어놓는 뒷얘기”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온라인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com/>)의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관련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문화면에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라는 제목으로 사진에 보도된 사람이 일명 빼끼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는 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람들을 붙잡고 강매하는 방식의 호객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2면>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제목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앙일보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중간 이상 부분에 [별지]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9619616>) 및 (<http://news.joins.com/article/19619383>) 본문 하단에도 [별지]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한다. [별지]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9.

## [별지]

가. 제목 : 『대학로 삐끼』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2016년 3월 10일자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목의 기사에서 M제작사가 삐끼 영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M제작사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4월 15일자 문화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참조〉
-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 사례15

자살자를 수치화한 신청인의 웹툰을 보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권을 침해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966, 2016서울조정1967(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 2. 주식회사 매경닷컴 (MBN, 인터넷 MBN)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11. 21.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자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도입부에 온라인에서 주목을 끈 웹툰이라며 자살자를 수치화한 그림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웹툰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에게 저작권료 개념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했으며,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MBN - 김주하의 뉴스초점 프로그램 『‘나’를 사랑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19일자 뉴스면)
- 내 용



▷ 앵 커 : 작년 5월, 온라인에서 주목을 끈 웹툰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 2시간에 3명, 20시간 동안엔 고등학교 한 반 전체인 30명이 사라집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고속버스 탑승객 40명, 그리고 한 달이면 300세대 아파트 주민 1,200명이 사라지지요.

무슨 공포영화 같은 이 수치는 2013년에 자살한 14,427명을 수치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텐데,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지키고 있지요. 2년 전 수치로 비교해도 인구 10만 명 당 27.3명, OECD 평균인 12명의 2배가 넘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난 2005년, 유명 여배우가 자살한 이후 한 달간 자살자는 총 1,160명. 그 전달에 비해 425명이 늘었고, 2004년 한 공직자와 기업인이 자살을 한 그 달에도 4,095명으로 평소보다 751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1994년부터 12년 간 조사해 보니, 유명인이 사망하면 평소보다 월 평균 137명이 더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후략)

### 조정신청취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3,0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은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25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인터넷 MBN)은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25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해당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17.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 사례16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켜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635·63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 제8중재부
접 수 일	2016. 4. 1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켜 아동의 이마에 멍이 들었다고 보도했고, 보육교사가 보낸 해명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아동은 교사의 박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된 사건 이전에 가정에서 놀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고,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에도 마치 신청인의 반론인 듯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박치기와 멍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학부모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마치 이번 박치기 논란에 대한 해명인 것처럼 인식되게끔 편집되었다며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도 보도에 신청인의 실명이 노출된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보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지급만을 원하여, 양 당사자간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4일자)

#### ■ 내 용

▷ 기 자 : 어린이집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아동 학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 ▷ 피해아동어머니 : 손을 펴더니 자기 머리를 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때린거야?) 그랬더니 응 엄마 이렇게 때렸는데 참았어. 안 울었어.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
- ▷ 학부모 : 선생님한테 어디 맞았어.
- ▷ 엄 마 : 그렇게 맞았어.
- ▷ 아 이 : 팔을 이렇게 잡더니 확 밀었어. 말 안 듣는다고.
- ▷ 기 자 : 피해아동은 한명이 아니라는데요.  
한 아이는 어른만 보면 불안해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 ▷ 앵 커 : 후유증이 늘 큰 문제거든요.
- ▷ 학부모 : 괜찮아 잘못된 거 아닌데 왜 그래 잘못된 거 아냐.
- ▷ 학부모 : 집에 오면 (힘든 마음을) 다 폭발하는 거 같아요.
- ▷ 리포터 : 이런 아이의 모습에 학부모들은 역장이 무너지는데요.
- ▷ 피해아동어머니 : CCTV를 보고 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CCTV를 보고 다음날 하혈을 시작했거든요.
- ▷ 자 막 :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박치기를 시키고 있는 보육교사의 모습.  
(그림방송)
- ▷ 기 자 :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킨 보육교사.
- ▷ 앵 커 : 교사라고 할 수 없는 거 같은데요.
- ▷ 박치기 피해아동어머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아이를 잡아끌어서 자기 힘으로 다시 우리 아이랑 박치기를 시켜요. 선생님이 머리를 맞닿은 그 상태 그대로 아이들이 무릎을 꿇어요.
- ▷ 앵 커 : 말이 되나요. 저게.
- ▷ 자 막 :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
- ▷ 기 자 : 보육교사의 이어진 태도에 학부모는 더욱 할 말을 잃었는데요.
- ▷ 학부모 : 자기 발밑에 애들 둘을 그렇게 벌을 세워놓고 보육교사는 다리 꼬고 앉아서 간식으로 나온 잔치국수 국물을 마시더라고요.
- ▷ 기 자 : 친구와 여러 번 머리를 부딪친 아이의 머리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훈육은 해도 체벌은 절대하지 않는다고 학대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 앵 커 : 머리를 부딪친 것은 체벌이 아닌가보죠.
- ▷ 기 자 : 해당어린이집을 찾아가 보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 ▷ 어린이집 관계자 : 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와서 찌르냐고요.
- ▷ 기 자 :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고 피해아동들 역시 어린이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6개월치 CCTV 영상까지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답답한 상황.
- ▷ 경 찰 : 보육교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출석을 연기했어요. 보육교사가 임신중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나가세요.
- ▷ 학부모 :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고요.
- ▷ 기 자 :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모든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 ▷ 피해학부모 :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전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SBS-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아동학대 보육교사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모닝와이드)은 지난 4월 14일자 모닝와이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아동학대로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해당 보육교사는 훈육은 하되 체벌은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하는 중에 보육교사가 박치기를 시켜 아이들에게 박치기로 인한 상처가 났다고 방송을 하였지만 문제가 되는 사건 전에 해당 아이의 어머니가 할머니네서 놀다가 이마에 상처가 나있다고 어린이집에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당일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치기를 시켜 이마에 상처가 난 것이 아닌 그 전부터 있던

상처를 마치 확대행위를 행해 상처가 난 것이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육교사는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방송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이며, 사건이 있기 거의 1년 전 문자를 이번 사건에 대해 보육교사의 해명 메시지인 척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치기를 시켜 이마에 상처가 난 사실 또한 그 전부터 있던 상처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제작한 외주제작사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아래 신청인 계좌로 2016. 5. 27.(금) 18:00까지 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 등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6. 5. 20.) 이후 <SBS-TV> 및 계열사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제작에 참여한 외주제작사 주식회사 ○○○ 및 소속 임직원 (PD, 작가 포함)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5.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 사례17

병원에서 의료기록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경기조정131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OBS경인TV)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6. 10. 2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실종된 가족을 추적하는 르포를 보도하면서 해당 실종자가 치료받았던 병원 관계자인 신청인에게 실종자의 의료기록을 문의하는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없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촬영 및 녹화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보도에 동의한 바 없으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의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신청인이 동의의 존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이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 OBS경인TV - 추적르포 프로그램 『사라진 가족 4』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1일자)

#### ■ 내 용

- ▷ 나레이션 : 실종 당시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 ▷ 남 자 : 어떤 업무 보시려고 하세요?
- ▷ 기 자 : 어머니께서 실종되셔가지고 찾으려고 진단서가 필요해서요.
- ▷ 신청인 : 진단서를 받으시려고요?
- ▷ 남 자 : 네
- ▷ 나레이션 : 이렇게 어머니의 실종을 확인할 때마다 막내아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 ▷ 남 자 : (진단서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 ▷ 신청인 : 이거(실종자 상태)는 나온 그대로세요. 알츠하이머 치매 있으시고 고혈압 있으시고 내용 그대로예요.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도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 한다.

2016. 11. 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